

아동학대 예방·신고 절차

어린이집·유치원 교직원용 1장 요약 · 의심되면 내부 결론을 기다리지 말고 아동 안전을 우선합니다.

신고의무자 핵심

어린이집·유치원 교직원은 직무 중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들면 신고해야 합니다. 확정·증거 수집·기관 내부 승인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.

관찰 포인트 · 한 가지 징후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

신체

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반복됨 · 회복 단계가 다른 상처 · 보호자 설명과 관찰 사실이 맞지 않음

행동·정서

갑작스러운 위축·공격성·퇴행 · 특정 어른이나 귀가를 심하게 두려워함 · 지속적인 경계

방임

계절에 맞지 않는 옷 · 심한 위생 불량 · 잦은 무단결석 · 필요한 치료·보호가 계속 제공되지 않음

성 관련

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지식·행동 · 특정 상황·사람에 대한 갑작스러운 공포 · 신체 불편 호소

의심할 때 4단계

1

안전 확보

현재 위험하면 의심되는 사람과 분리하고 112에 신고합니다. 생명·신체가 위급하면 119도 요청합니다.

2

사실 기록

날짜·시간·장소, 직접 본 상처·행동, 아이가 자발적으로 한 말을 구분해 그대로 적습니다.

3

국번 없이 112

‘아동학대 의심 신고’라고 알리고 아동 정보, 현재 위치·위험, 의심 이유를 아는 만큼 전달합니다.

4

신고 후 보호

접수 시각과 안내를 기록하고 관계기관에 협조합니다. 신원·기록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만 공유합니다.

아이에게 말할 때

“말해 줘서 고마워.” “네 잘못이 아니야.” “안전하도록 도와줄게.”

하지 않기 · 답을 암시하는 질문, 반복 추궁, 비밀 약속, 의심되는 사람과 대면, 신고 전 보호자 통보, 단체 대화방 공유

정보가 완전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· 112 · 기관 주소: _____

공개 근거: <https://www.ncrc.or.kr/ncrc/cm/cntnts/cntntsView.do?cntntsId=1484&mi=1030>

참고 원천: 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,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· 검토일 2026-07

가정·교육 현장에서 비상업적 목적으로 인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jarada.net · 자람